

개·고양이 등 수입동물 검역방법(제20조 관련)

1. 개·고양이

가. 검역방법

1) 구비서류

가) 개·고양이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수출국이 EU 회원국(영국은 북아일랜드만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EU 회원국(영국은 북아일랜드만 포함)에서 발행한 Pet Passport로 검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나) 시험연구용 개·고양이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수출국이 EU 회원국(영국은 북아일랜드만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EU 회원국(영국은 북아일랜드만 포함)에서 발행한 Pet Passport로 검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실험동물 수입업체"가 검역신청함을 증명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실행기관"으로 공급사항 증명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인도하는 개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수출국이 EU 회원국(영국은 북아일랜드만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EU 회원국(영국은 북아일랜드만 포함)에서 발행한 Pet Passport로 검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증명

라) 서류 검사결과, 구비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여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계류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체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확인 등

가) 수입 반려동물의 마이크로칩 번호와 검역증에 기재된 마이크로칩 번호를 대조하여 개체를 확인하고 임상검사를 실시한다.(시험연구용의 경우 문신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나) 검역관은 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혈액채취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내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시험(FAVNT: Fluorescent antibody virus neutralisation test 또는 RFFIT: Rapid fluorescent focus inhibition test) 결과 0.5IU/ml 이상임을 검역증에서 확인한다.(시험연구용의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다) 가) 및 나)항의 확인결과 조건 미충족시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여 마이크로 칩을 이식(현장에서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하거나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이 확인될 때까지 계류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결과 미충족 시: 계류장 입고하여 접종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단, 임상검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함)

- (기준치 충족) 즉시 개방

- (기준치 미충족) 추가 예방접종 후 당일 개방

라)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시각장애인 보조건을 대조 확인하고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건의 개체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확인은 제외한다.

3) 광견병 비발생지역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질병 발생 보고 등에 따른다

- 적 용 국 가 -

과들루프섬, 괌,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독일, 라트비아, 레위니옹섬,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르티니크,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디브, 몰타,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기에, 불가리아, 브루나이, 사모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루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윌리스푸투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지부티, 체코, 카보베르데, 케이맨 제도, 코모로, 쿠웨이트,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프랑스령폴리네시아, 피지, 핀란드, 하와이, 호주, 홍콩

※ 광견병 발생으로 WOAH에 통보되는 경우 목록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되고, 상대국 정부에서 WOAH에 광견병 청정 국가(지역) 선언을 하면 광견병 비발생 지역으로 인정되며, 광견병 비발생국(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를 통해 공개한다.

2. 꿀벌

가. 정밀검사 방법

대상 질병명	검사방법	검사시료
부 저 병	홀스트씨 우유검사 및 원인체동정	죽은 유충 또는 성충 등
기생성응애류	원인체동정	“
석 고 병	원인체동정	“
백 목 병	원인체동정	“

나. 시료채취 방법

- 1) 시료종류: 죽은 유충·성충, 번데기, 유충, 성충, 소비, 밀랍 및 임상 검사상 의심이 되는 시료
- 2) 채취용기: 멸균된 종이로 포장하여 압착방지
- 3) 시료 채취량

검사대상수(군)	시료채취수(군)	군별 시료채취 개체수(마리)
10 이하	전체	군별로 일정비율로 합계 100이상
11~100	10~20	10이상
101~500	20+100초과량의 4%	10이상
501 이상	40이상	10이상

4) 시료채취 세부방법

- 가) 시료채취 방법은 건별, 생산농장별을 단위로 무작위로 선택
- 나) 질병감염의 의심 또는 검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 채취수 증가
- 다) 체표면 기생 진드기 검사는 생산농장별로 5군 이상 임의선택 검사

3. 가금이외의 조류

가. 검역기간: 5일 이내, 다만 가축전염병병원체의 전파우려가 없다고 인정 되고 상대국 검역증명서가 구비된 휴대 애완조류의 검역기간은 1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나. 구비서류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한 검역증명서

다. 시료채취 방법

- 1) 수입 건당 5수의 개체별 분변 1점 및 신선한 분변 2~3개를 혼합하여 5개 시료 채취(멸균된 면봉으로 채취하여 총 10점)
- 2) 5수 미만인 경우 전 두수 시료 채취

4. 초생추

가. 수입초생추(병아리, 오리, 타조등)의 시료채취 방법

- 1) 폐사 또는 도태된 병아리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 수는 아래와 같다.

가) 30수 이상: 신선한 폐사(도태)체 중 30수 채취

나) 30수 미만: 전수 채취[단, 폐사(도태)체가 10수 이하인 경우 폐사(도태)체 및 면봉(분변을 멸균된 면봉으로 채취) 시료를 추가하여 총 10개 채취]

2) 폐사 또는 도태된 병아리가 없을 경우, 붉은색이나 녹색을 띠는 분변 5~10개를 혼합하여, 멸균된 면봉으로 채취하여 10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나. 초생추 검역시행장에는 검역종료시까지 타 가금류 등의 사육을 할 수 없다.

다.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시행장 관리인에게 검역시행장내 수입초생추의 입고전과 출고 후에 소독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라. 관할 지역본부장은 수입초생추의 검역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역학조사 및 임상관찰

2) 관리인의 사양관리일지 확인

3) 폐사축, 오물, 배설물 및 운송상자 등에 대한 소독, 소각, 매몰 등에 대한 조치이행 사항

4) 기타 방역상 필요한 사항

마. 관할 지역본부장은 초생추의 검역이 종료된 경우, 초생추 검역시행장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역장소

2) 축주명(실화주명) 또는 수입자

3) 품명

4) 수수

5) 원산지

6) 수입일자

7) 검역종료일

8) 예방접종 등 기타 특이사항

5.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감수성동물(개·고양이·과일박쥐)

가. 적용국가: 호주 및 말레이시아

나. 적용대상

- 1) 호주: 고양이 및 과일박쥐
- 2) 말레이시아: 개, 고양이 및 과일박쥐

다. 검역방법

- 1)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존 검역기준 적용
 - 수출국 또는 지역(한반도 크기 이상의 행정 지역에 한함)내에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질병 첫 보고 이후 비발생 증명 첨부
 - 수출 전 14일 이내의 헨드라·니파 바이러스 혈액검사 결과 음성이고, 수출 전 60일간 헨드라·니파바이러스 비 발생장소에서 사육된 증명서 첨부
- 2) 수출국에서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증명서 미 첨부 시
 - 개·고양이: 21일간 계류 검역실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개방
 - 과일박쥐: 21일간 검역장소에서 검역실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개방

6. 맹견(猛犬)

가. 임상검사

- 수입 맹견의 임상검사 및 마이크로칩 확인은 수입화주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화주가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맹견 핸들러가 화주를 대신하여 참여할 수 있다.

나. 대상 품종

- Bull terrier family (Including Pitbull terrier), Mastiff family, 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Cane Corso, Tosa Inu, Doberman Pinscher, Rottweiler, German Shepherd, Caucasian Ovcharka, Jindo Dog, Chow Chow, Wolf hybrid 등

7. 가축 외 포유류

가. 공항만 현장검사

- 1) 주요 검사 내용
 - 동물 운송 용기(상자)의 파손 여부
 - 현물과 수출국 검역증명서 상의 봉인번호 일치 여부
- 2) 검사 결과 조치내용
 - 운송용기 파손 등으로 가축 방역상 문제의 우려가 있을 경우, 검역물에 대한 접근제한 및 소독 등 조치
 - 운송용기의 봉인번호와 수출국 검역증명서 상의 봉인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검역시행장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즉시 통보

나. 서류 검사 및 역학조사

- 1) 주요 검사 내용

가)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검역증명서 내용과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 등 확인

- 두수, 봉인번호
 - 품명(학명 포함)
 - 사육시설 명칭, 주소, 승인번호
 - 예방접종내역(제품명, 면역유효기간, 접종연월일)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실시한 경우 채혈 일자,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기관명
 - 수출검역시설의 주소 및 검역기간
 - 내·외부 기생충 처치 내역(약제명, 처치 방법, 처치 횟수, 처치 일자)
 -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 2) 광견병 비발생국가(지역)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게시내용에 따른다.
- 3) 검사결과 조치사항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검역증명서 내용 및 수입위생 조건 준수여부 확인결과,
- 광견병중화항체가 0.5 IU/ml 미만 또는 수입위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개체 불합격 조치”
 - 미승인 사육시설에서 사육된 경우, “전 두수 불합격 조치”
 - 선적 후 검역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불합격 조치”

다. 임상검사 등

- 1) 수입 야생동물의 마이크로칩 번호 등 개체식별번호를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번호와 대조하여 개체를 확인하고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동물의 습성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사육관리일지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 개체식별표시가 제거 또는 훼손되어 개체별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개체 불합격 조치”, 또는 소형동물 (설치목)의 최소 운송용기 식별정보가 검역증명서와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최소 운송용기의 개체 불합격 조치”
- 3) 1)의 임상검사 결과, 별표 24에 따른 전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별표 7에 따라 의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 하여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4) 정밀검사 결과, 전염병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 “전체 불합격 조치”하고 별표 5에 따라 조치한다.